

特許出願의 拒絶豫告에 對한 出願人의 對策(完)



李 鍾 珏

(이종각 特許 法律事務所)
所長·辨 理 士

目 次

I. 序 言

II. 拒絶理由의 통지 및 出願人의 對策

1. 拒絶理由

(1) 취 지

(2) 거절이유와 무효사유

(3) 거절이유의 명시

(4)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

2. 拒絶理由에 대한 對策

(1) 기간지정과 의견서 제출

(2) 보정서 제출기회

(3) 출원분할

(4) 출원변경

(5) 출원의 취하 및 포기

(6)査定에 대한 不服항고심판의 청구

(7) 上 告

III. 結 言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3) 출원분할

1) 의의

출원분할이라 함은 둘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특허출원이 특허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이라면 원특허출원과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현행 특허제도 下에서는 1발명 1출원원칙을 채용하고있다. 그러나 발명은 無形이기 때문에 1발명판단이 곤란하고 위규정을 위반한 출원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1발명 1출원 원칙을 위반한 출원이라도 “발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본래의 취지에 입각 1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명백히 포함된 경우 단순한 출원절차의 형식위반으로 거절사정하고 재출원을 요구하면 출원인은 선원권을 상실하고 심사처리도 복잡화 하게된다.

따라서 출원분할은 1발명 1출원 원칙위배 출원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이라 볼 수 있으며, 출원인이 법제9조(1발명 1출원)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출원분할로서 거절이유를 면할 수 있다.

3) 요건

i) 형식적요건

(가) 원출원의 계속

분할출원서의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中에 있어야하고,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된 후에는 분할출원 할 수 없다.

(나) 주체의 동일성 유지

원출원과 분할출원인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출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권리변동의 입증자료가 없는한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인이 되어야한다.

(다) 적법한 기간내 분할출원·원출원의 보정

기간內 분할출원해야 한다.

ii) 실제적 요건

(가) 분할전 원출원에 2이상 발명포함

원출원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을 말한다. 다만, 출원분할시 현실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이 아닐지라도 보정에 의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에따라 특정되는 발명도 원출원의 발명으로 취급한다.

(나) 분할출원전 원출원에 포함된 2이상의 발명中 하나이어야 한다.

2이상의 발명中 하나인지 여부는 그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함은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 발명이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발명이 동일하면 분할출원이 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법 11조에서의 발명의 동일성 심사기준에 의거 판단한다.

(라) 분할된 새로운 출원이 일반적 등록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4) 분할절차

i) 출원서

원출원을 1발명 1출원(법 제9조) 원칙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나머지 발명부분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의거 분할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분할출원서에 원출원을 표시해야 한다.

ii) 첨부서류

신규출원서와 마찬가지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원출원서에서 원용할수 있는 것은 원용할수 있다.

5) 분할의 효과

i) 출원일 소급

분할된 출원은 원출원시 출원한 것으로 소급된다.

ii) 소급의 예외

분할출원이 법제6조의2, 실용신안법제5조의2,

법제7조의 제2항, 제42조 제2항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이유는 원출원일까지 소급하면 선원지위를 갖는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경우 분할출원의 출원시점은 실제로 출원수속 한때로 인정된다.

iii) 원출원과의 관계

분할출원의 새특허출원은 원출원의 보정이 아니고 전연별개의 독립출원이다. 따라서 원출원에서 밝은 절차, 효력등은 승계되지 않고, 심사청구·심사개시·특허사정·거절사정등도 원출원과 독립적으로 행해 짐을 유의해야 한다.

(4) 출원변경

1) 의의

출원변경이란 출원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출원형식의 변경을 말한다. 따라서 출원의 내용 즉, 실체의 동일성을 보지한채로 출원형식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의장등록출원으로 또는 그 반대경우로 출원형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꾸어 출원변경하는 것은 의장의 특수성으로 미루어보아 극히 적고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제14조에서는 출원변경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2) 취지

물품에 관한 창작에 대하여는 그 객체가 無形이기 때문에 출원인 자신이 제도의 오해나 대상물의 판단곤란으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 어느 것으로 출원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즉, 특허출원할 것을 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하거나 이와 반대로 이경우 출원형식의 잘못으로 그 출원을 거절하고 재출원을 요구하면 출원인에게는 先願權을 빼앗기고 심사절차도 비경제적이면서도 행정상 처리도 복잡하게 된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을 한후 보다 유리한 출원형식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 이런경우 출원인의 편의도모와 심사에 있어서도 절차의 경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출원변경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

절이유가 출원형식의 잘못으로 거절이유를 접하게 되면 이에 적당한 출원으로서 출원변경을 하여 거절이유를 면할 수 있다.

3) 출원변경할 수 있는 범위

i) 同質 변경 출원

물질·물건·방법·장치 상호간의 출원변경. 다만 이경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출원변경 보다는 보정서로 가름되고 있다.

ii) 異質 변경 출원

(가)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 모두 객체가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므로 단적으로 말하면 그 창작이 물품에 관한 것인限 양자의 차이는 量的인 정도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호출원변경은 당연하다.

(나) 의장등록을 특허출원으로 변경. 그 창작이 물품에 관한 것인限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의장의 특수성으로 보아 의장을 특허출원으로 상호간 출원변경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

그 창작이 물품에 관한 것인限 실용신안, 의장출원의 대상이 가능하다.

4) 출원요건

i) 원출원의 계속중

(가) 변경전 원실용신안, 원의장등록출원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계속 되어야 한다.

(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심사청구가 필수요건은 아니다.

(다) 원출원의 무효·포기·취하·사정·심결이 확정되면 안된다.

ii) 주체의 동일성 유지

(가) 원출원의 출원인 또는 그권리의 승계인

(나) 공동출원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변경해야 한다.

iii) 재체의 동일성 유지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장출원의 경우에는 최초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사진·모형·전본) 기재사항 범위가 동일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iv) 적법한 기간 유지

(가)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은 최초 거절사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內이다. 최초 거절사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란 항고심판에서 파기환송 되거나 재심사결과 거절사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5年內(여기서 최초거절사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의 기간을 제외한다).

(다) 특허청장, 심판장, 심사관에 의해서 직권 또는 신청등에 의해서 그 기간이 연장된 때 그 연장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변경절차

i) 출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거 새로운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변경출원서에는 원출원의 표시를 해야한다.

ii) 첨부서류

신규출원과 마찬가지로 구비하되 원출원에 첨부된 서류원용 가능하면 원용할 수 있다.

iii) 주의할 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할때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당초출원의 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內에 출원해야 됨을 유의해야 한다.

6) 효과

i) 원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원출원의 선원권은 상실된다.

ii) 출원일 소급적용

(가) 소급효과-변경출원은 원출원시 출원한 것으로 출원일이 소급된다.

(나) 소급효과의 제외

7) 법 제7조(신규성의제) 법 제42조(우선권 주장)적용은 현실적으로 변경출원일자로 인정된다. 이것은 이미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법 제6조의2 (특허의 요건), 실용신안법 제5조의2(등록요건) 규정에 적용되는 타특허출원이나 특허출원의 경우 변경출원일자로 기준한다. 이점은 분할출원에서 설명한 바와같다.

(5) 출원의 취하 및 포기

1) 의 의

특허출원인은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출원의 취하, 포기를 할수있다. 취하란 출원인의 자발적행위 또는 법률상의 의제에의해 출원의 계속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고, 포기란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그 권리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취하, 포기는 출원절차상 뿐만 아니라 심판절차상의 취하 또는 포기등 여러 가지 태양이 있다. 따라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접했을 때,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를 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의 취하는 당초 출원 내용을 요지 변경등에 의해서 보정할 수 없으므로써, 재출원을 위하여 당초 출원에 대하여 출원취하를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출원의 포기는 일단 특허출원은 하였으나 출원인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실지이익이 없었던지 또는 단순히 선원권 지위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출원포기 의사로서 출원포기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그 실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검토한후 출원의 포기나 취하로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시 기

i) 거절사정이나 특허사정이 확정되기전 까지 할 수 있다.

ii) 다만 취하의 경우 심사청구는 출원절차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취하할 수 없고, 이의 신청은 이의결정 되기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 절차 및 취하, 포기할 수 있는 자

i) 절 차

취하 또는 포기 의사를 명백히 기재한 출원취하서, 포기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취하 또는 포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 보정명령에 불응시에는 그 절차를 무효 또는 그 출원을 그대로 속행할 수 있다.

ii)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자

(가) 출원인

(나) 공유출원의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이 있어도 전원이함께 동의해서 공동명의로서 제출해야 한다.

(다) 위임 대리인 경우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그 절차를 행할 수 없다.

(라)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2항)

4) 취하, 포기의 효과

i) 취 하

(가) 출원공개 공고전 경우

1) 선원권을 상실한다.

나) 재출원 가능하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보상태 이므로써)

(나) 출원공개 공고후 경우

1) 선원권 상실

나) 재출원 불가하다

2) 후원출원에 참증으로서 이는 당연히 인정된다(이경우 간행물 반포일자에 의한 공지간행물로서 인정된다)

2)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91조의2, 제3항규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加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ii) 포 기

출원공개 공고와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써,

(가) 선원권은 유지된다.

(나) 재출원은 할수없다.

(다) 후원출원의 참증으로 당연히 인용된다.

(라)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9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加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취하의 취소

대리인이 선임등록된 후 대리인의 착오에 의

해서 출원인의 의사에 反하여 특허출원을 취한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가 아니므로서 특허출원의 취하의 취소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사정에 대한 不服항고 심판의 청구

1) 의 의

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抗告審 例를 청구할 수 있다.

사정이라 하였으므로 거절사정은 물론 특허사정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특허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으며, 현행법 제도에서는 적용의 여지가 별로 없겠지만 특허사정도 받드시 출원인의 특허출원 그대로 하여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각자 대표 또는 특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 심판은 그 審級으로는 제1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허법은 사정절차를 준심판절차로 보고, 그 성격을 상급심으로서의 항고심으로 하고있다.

2) 취 지

거절사정후 不服할 수 있는 절차를 완전히 봉쇄하면 출원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거절사정 절차에 있어서도 심사관의 과오가 全無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청구의 기회를 열어 놓으므로서 출원인에게 자신의 방어와 변명기회를 부여하고 항고심판소에서 합의체 항고심판관에 의해 객관성 있는 재심리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받은 경우 진술한 바와 같이 항고심판의 청구로서 자기의 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3) 성 질

진술한 바와 같이 覆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

기 때문에 항고이유를 제한하지 않고 청구이유의 변경등도 가능하다. 동시에 심사에 대한 續審的인 성질도 있어 심사에서 밝은 절차는 항고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4) 항고심판의 청구

i) 당사자와 입증책임

(가) 당사자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

나) 공유출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 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행위 능력자에 의해서 청구해야 하고, 제외자의 경우에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외자의 특허관리인에 의해서 청구해야 한다.

(나) 입증책임

항고심판 청구인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ii) 청구기간

(가) 원 칙

사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 청구해야 한다.

(나) 예 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절차를 밟을 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위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日內, 기간이 만료된 후 1年內에 한하여 해태절차를 추완 할 수 있다(법 제33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도 본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iii) 항고심판 청구서제출

법 제125조(항고심판의 청구)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 청구서 및 청구의 취지, 그 이유 그리고 증거 방법들을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iv) 심사전치제도의 도입

(가) 취 지

출원 件수의 계속적인 누적과 이로인한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의 증가에 따라 항고 심판처

리의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한 제도로서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에서 파기되는 상당한 件수는 항고심판 청구와 동시에 하는 보정에 따른 것이므로서 이러한 항고심판청구는 항고심판관이 심리하기 보다는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의 처리가 효율적이며,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대 상

사정에 불복하는 항고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와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항고 심판청구의 특허출원이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해 항고심판 청구서는 항고심판을 하기 이전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는 것이다.

(다) 내 용

(ㄱ) 심사관이 원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의견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고 심판관에게 심판 하도록 한다.

② 심사결과 다른 거절이유 발견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보정서 제출을 기다려 재심사한 후 특허의 허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해야한다.

b)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견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보고후 이를 항고심판관에게 심판하도록 한다.

③ 출원공고후 이의 신청이 유등에 의해서 심사관이 거절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거절사정하지 않고 의견을 첨부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고심판관에게 심판 하도록 한다.

(ㄴ) 심사관이 원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원공고하고 특허할 것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원사정을 취소하고 특허사정을 해야한다.

(ㄷ) 심사관은 특허사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공고 결정등본을 송달한 후에는 특허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수 없다.

이것은 심사전치제도에 의한 심사가 아닌 일

반적심사와 다른 점이다.

심사전치 제도의 심사는 항고심판의 판단에 앞서 行해지는 준항고 심판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거절사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사정을 한다면 사정불복 항고심판 청구의 意義가 없고, 再항 고심판을 청구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심사전치 제도의 취지에 反하기 때문이다.

5) 심 리

법 제126조(심판규정의 준용)규정에 의한 심리가 진행된다.

6) 심결의 효과

i) 사정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항고심판관은 그 사정을 파기하여야 한다. 自判이나 환송이냐는 항고심판소의 재량에 속한다.

ii) 원심사의 사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심결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사정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심사규정에 준용된다.

iii)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사규정에 있어서 출원공고와 이의 신청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iv)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되면 一事不再理의 효과가 발생한다.

(7) 上 告

1) 의 의

항고심결에 대한 상고라 함은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자가 그 심결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결의 파기, 변경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불복 상고를 말한다.

항고심판관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 제144조).

2) 상고의 대상

법령에 위반된 항고심판의 심결을 그 대상으로

로 한다. 여기에서 심결이란 모든 항고심판에서의 심결을 말하므로 항고심판에 대한 재심의 심결도 포함된다. 그러나 항고심판에서의 결정등은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출원인은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항고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전술한 내용을 전제로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여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Ⅲ. 結 言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후 특허사정을 받아서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면 그것으로 만족되지만 실질심사 과정에서 전술한 거절이유에 해당한다하여 거절이유서를 심사관으로 부터 송달받게 되면 의견서 제출과 보정서 제출로서 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으며, 의견서·보정서에 의해서 심사관을 설득하지 못하여 거절 사정을 받게 되면 출원인 자신의 판단에 의해 소정기간내 출원분할이나 출원변경 또는 출원의 취하,

포기를 행할수도 있으며 거절사정에 不服의사가 명백할때에는 항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합의체에 의한 항고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성이 있는 재심사를 청구할수도 있으며, 항고심판소의 심결에도 不服의사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서를 송달 받았을때 그 특허출원을 가볍게 생각해서 처리해서는 안되고 거절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접하게 되면 그 특허출원은 특허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으나 이러한 생각은 출원인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너무 가볍게 처리한다고 볼수 있는 것으로서 출원인 자신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유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발명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또는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해서 많은 비용과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서 창안한 발명을 출원인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리화해서 자기의 발명을 활성화 시킨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어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 아 래 ◎

-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5-6845)로 문의바랍니다

KIPA通信 發刊 案内

本會는 매월 10일 特許界 뉴스誌 KIPA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

海外 特許情報 發刊案内

本會는 年 4회 季刊으로 海外特許情報를 發刊하고 있습니다.

4·6倍版 200面내외로 發刊되는 이 刊行物에는 海外 特許制度를 비롯하여 각종 特許情報가 실려있습니다.

會員社에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 많은 愛讀바랍니다.